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

01 디자인의 정의

[58회]

1.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③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④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해설 / 정답 ⑤ [판례 문제]

- ① | ×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2013다202939).

② | ×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2016다219150).

③ | ×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히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2013후2613).

④ | ×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고,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14허1808).

⑤ | ○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③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 정답 ① [판례문제]

- ① | × |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은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목록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000후3388).
- ② | ○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합되어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한 데, 이것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법상의 물품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98후2900).

- ③ ㉟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디자인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98후492).

- ④ ㉟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



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



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심사관의 거절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2012후3343).

- ⑤ ㉟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2005후2274).

02 부분디자인

[59회]

3.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③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 ④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 해설 / 정답 ③ [심사기준 문제]

① | ○ | 1. 부분디자인에서 **물품의 부분**은 물품성이 인정되는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부분디자인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심사기준).

가.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 (1) 독립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 (2)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일 것

나.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 (1)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 (2)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다.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화상의 경우 별도 취급)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

2. 부분디자인에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부분디자인에서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부분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 ③ |×|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 및 화상이며, 물품의 부분, 한 벌의 물품의 부분과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심사기준).
- ④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의 보정으로 인하여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된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단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기준).
- 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란 공지되었음을 뜻한다. 출원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는 아래 표 중 2번과 3번 유형이고, 출원디자인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는 아래 표 중 4번 유형이다(심사기준).

유형	공지디자인 (A, a를 포함하는 A)	출원디자인 (A, A', a, a')
1	부분디자인 (A)	부분디자인 (A, A')
2	완성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3	부품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4	부분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 (a, a')

참고로 신규성(또는 확대된 선출원)과 선출원 적용은 구분해야 한다. 선출원 위반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디자인 간에만 적용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부마사지기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후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03 글자체디자인

[60회]

4.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 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 ②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 ③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 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 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 해설 / 정답 ② [심사기준 문제]

- ① |×| 글자체는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8류에 해당한다.
- ②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심사기준).
- ③ |×|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는 글자체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다수의 글자체가 개발되었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한다(심사기준).
- ④ |×|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심사기준). 반려사유가 아니라 거절이유이다.
- ⑤ |×|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제94조 제2항). 甲의 글자체 사용 행위와, 그 사용으로 생산된 강의노트에는 디자인권의

배타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62회]

4-1.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④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설 / 정답 ② [판례 문제]

- ①, ④ |○|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 ② |×|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2후597).

- ③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⑤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 등은 성립요건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심사기준).

04 디자인등록출원

[58회]

5.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 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제17조).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 ②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제2항).
- ③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

④ 101 특허와 내용이 같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제24조 제4항, 제5항).

⑤ 101 특허와 내용이 같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제25조 제1항).

6.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ㄹ.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 해설 / 정답 ② [조문 문제]

-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 0013

- ㉔. |○| 제22조 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제23조 제1호).
- ㉕. |×|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59회]

7.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 ②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제93조).
- ③ |○|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제175조 제3항).
- ④ |×|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

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제66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제66조 제2항).

- ⑤ |○|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26조 제3항).

[60회]

8.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 창작에 참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③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 ④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설 / 정답 ③ [판례 문제]

- ①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자의 지시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였거나,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2021허2595).

- ②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6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제175조 제4항 제1호).
- ③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015후1669). 참고로 특허 심사기준에는 발명자 허위기재의 경우 보정명령 후 출원 무효로 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 ④ |○| 거절이유(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정보제공사유(제55조, 제62조 제4항), 직권재심사 사유(제66조의2 제1항), 이의신청 사유(제68조 제1항 제1호), 무효사유(제121조 제1항 제1호)
- 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i)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ii)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3조 제2항).

[62회]

8-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 ⑤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 해설 / 정답 ② [조문 문제]

- ①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제5조).
- ②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행위를 한 때부터이다.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9조).
- ③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제10조).
 -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 ④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제26조).
- ⑤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제15조).

[62회]

8-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 ②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제54조 제3항).
- ③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제57조 제3항).
- ④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7조 제1항).
- ⑤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추첨제가 아니라 협의제이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제57조 제2항).

05 디자인의 유사 판단

[60회]

9.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 해설 / 정답 ② [심사기준 문제]

- ㄱ. |○| 신규성과 용이창작성 판단할 때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말한다(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외 공지된 디자인 또한 참고하며 이를 국제주의라고도 부른다.
- ㄴ.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46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46조 제5항). 제46조 제5항은 동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하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요구한다. 둘 이상의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심사기준).

- ㄷ. |○|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조 제3항).
- ㄹ. |○|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만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3조 제3항).
- ㅁ. |×| 불명료한 지문이다. 등록요건 판단 시에도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침해판단 시에도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등록요건 판단 판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95후750).

(침해 판단 판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2013다202939).

[61회]

10.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②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③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 ④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해설 / 정답 ② [판례 문제]

- ①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0다23739).
- ② |×| 글자체디자인도 유사판단 방법은 위 1번 지문의 일반론과 같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다수의 글자체가 개발되었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한다(심사기준). 즉 실무에서는 글자체가 서로 조금만 다르면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
- ③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10후722).
- ④ |○|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2011허7157).
- 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2016다219150).

06 신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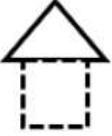
[60회]

11.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 ②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③ 한 별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별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형틀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⑤ 전사지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 해설 / 정답 ⑤ [심사기준 문제]

- ① |○|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해야 신규성 위반이다.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려면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의 형태도 동일·유사하여야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기본적으로 비유사물품이나 안경과 안경테와 같이 부품의 외관이 완성품에 가까우면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심사기준). 예컨대 안경테가 공지된 이후 안경이 출원된 경우 이들은 유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양자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유사디자인으로 신규성 위반이다.
- ② |○| 아래 신규성 상실 유형 중 공지디자인: 완성품 부분디자인 vs 출원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심사기준).

공지디자인	출원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부분 디자인	 부품 디자인	- -	
 완성품 부분디자인	 부품 디자인	 부품 디자인	 완성품 디자인	 완성품 부분 디자인	
 한 별의 물품디자인	 한 별의 물품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구성품 디자인	

- ③ |○| 한 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별 전체로서만 신규성 요건을 판단한다(심사기준).
- ④ |○|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해야 신규성 위반이다.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려면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의 형태도 동일·유사하여야 한다. 형틀과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 예컨대 빵틀과 빵은 물품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심사기준). 물품부터 유사하지 않으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⑤ |×| 전사지란 티셔츠 같은 의류나 머그컵 등에 원하는 그림을 전사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를 말한다. 특허법원 판례는 전사지가 공지된 상태에서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붙어 있는 공기(밥그릇)에 대해, 전사지와 공기는 물품이 비유사하므로, 공기는 신규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7

허67). 예컨대



모양의 전사지가 공지된 상태에서 표면에



모양이 프린팅된 공기(밥그릇)가 출원된 경우, 해당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 아니다. 전사지와 공기는 물품이 비유사하기 때문이다.

07 창작비용이성

[59회]

12.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해설 / 정답 ② [판례 문제]

- ① ㄱ, ③ ㄱ, ④ ㄱ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2013후2613).

- ②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3조 제2항). 신규성과 달리 창작비용이성은 2 이상의 디자인의 결합으로도 판단 가능하다.
- ⑤ |○|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16후878).

08 확대된 선출원주의

[6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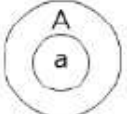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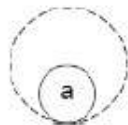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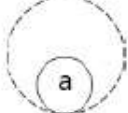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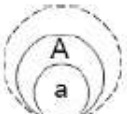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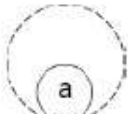
13.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의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 ②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 ③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 ④ 甲의 선출원이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별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 ⑤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 해설 / 정답 ③ [심사기준 문제]

확대된 선출원 위반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완성품	부품
2	완성품	부분디자인
3	부품	부분디자인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5	한 별의 물품	구성물품
6	합성물	구성각편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a*)	
 완성품A	 부품 a,a*	 부분디자인a,a*
 부품A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a,a*	
 부분디자인A (a를 포함하는 A)	 부분디자인a,a*	
 한 벌의 물품A (a를 포함하는 A)	 구성품a,a*	
 합성물A (a를 포함하는 A)	 구성각편a,a*	

① |○| 유형 2번

② |○| 유형 4번

③ |×|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해야 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즉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에서 형상은 그 결합디자인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甲과 乙의 형상이 동일·유사하다면 乙의 출원에 대해서는 제46조(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유형 5번

⑤ |○|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선출원 디자인(법 제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된 출원의 법 제56조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디자인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

다(심사기준). 선출원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에 반하여,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물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상관 없다.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하면 적용된다. 예컨대 바퀴가 결합된 자동차가 선출원된 후 그 바퀴에 관해 후출원한 경우 선출원 자동차와 후출원 바퀴는 물품이 비유사하지만 선출원 자동차의 일부인 바퀴와 후출원 바퀴를 대비하면 물품이 동일(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확선 적용 가능하다. 신규성도 비슷하다. 바퀴가 결합된 자동차가 공지된 후 그 바퀴에 관해 출원한 경우 자동차와 바퀴는 물품이 비유사하지만 그 자동차의 일부인 바퀴와 출원 바퀴를 대비하면 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들 관계에서 신규성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출원은 다르다. 선출원은 전체 물품과 물품이 동일·유사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를 선출원하고 바퀴를 후출원한 경우 자동차와 바퀴는 물품이 비유사하므로 그 이유만으로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09 관련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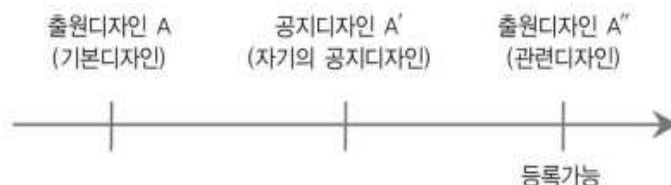
[58회]

14.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④ 무효심판 개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물품 또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혼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다(심사기준). 관련디자인이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동일자 출원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유사한 디자인이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므로, 관련디자인의 물품은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유사해야 하는 것이다.
- ②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 ③ |○|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35조 제1항).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 또는 출원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신규성)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출원디자인 A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A' 출원디자인 A'' (관련디자인)

등록가능

- [61호]

- 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위반하면 디자인 등록거절사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된다.
- ㄷ.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 ㄹ.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ㅁ.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 0031

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35조 제1항 본문).

ㄴ. |○| 제62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ㄷ.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제48조 제2항). 변경출원이 아니라 보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ㄹ.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5조 제3항).

ㅁ.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제96조 제6항).

10 복수디자인

[59회]

16.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68조(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⑤ 지식재산처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 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 ②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5항).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5조).
- ③ |○|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 ④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제121조 제1항).
- ⑤ |×|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 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제38조 제4항).

11 한 벌 물품의 디자인

[59회]

17.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 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용 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 해설 / 정답 ⑤ [심사기준 문제]

- ① |○|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한다. 다만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심사기준).
- ②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4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제42조 제2항).
- ③ |○| 제42조 제1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될 것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심사기준).
- ④ |○|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심사기준).
- ⑤ |×|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은 i)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의 [별표5](한 벌의 물품별 구성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ii)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위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의 [별표5]의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한 별의 물품으로 본다. 다만 “한 별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끼리 된 경우(예: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를 출원한 경우)에는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심사기준).

12 디자인일부심사

[58회]

18.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 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 해설 / 정답 ② [심사기준 문제]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2조 제2항).

i)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i)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5항).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2조 제3항).

i)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ii)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iii)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iv)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v)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vi)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vii)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ㄱ. |○| 제3조 제1항 본문 反

ㄴ. |×| 제33조 제1항 제3호 反, 신규성 위반은 위반임이 명백(제62조 제5항)하거나 정보제공(제62조 제4항)이 없는 한 심사하지 않는다.

ㄷ. |○| 제34조 反

ㄹ. |×| 제33조 제2항 제1호 反, 창작비용이성 위반은 주지 형상에 의한 것(제33조 제2항 제2호)만 심사하며, 공지디자인에 의한 것(제33조 제2항 제1호)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심사하지 않는다. 지문의 반포된 간행물 게재는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주지 형상이 아니고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공지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위반은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ㅁ. |○| 제41조 反

[61회]

19.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 ①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 ②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 ③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 ④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 ⑤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제37조 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시규 제38조 제3항).

13 신규성 상실의 예외

[61회]

20.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 ②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 ③ 甲은 2024.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4.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4.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④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 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였다.
- ⑤ 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3. 2. 6. 공지한 후, 2024.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4.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 해설 / 정답 ⑤ [사례 문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 제1항).

- ① |○| 각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여야 한다. 최초 공지일이 디자인 a 공지일이므로, 디자인 a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여야 디자인 a 와 디자인 b 모두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 공개자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지디자인에 대한 창작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심사기준). 제3자에 의해 공지되었어도 그 공지디자인이 甲의 것이라면 그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4후1341). A2는 적법하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한 A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 구법에서는 정해진 법정기간 내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구법 제36조 제2항).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구법 제36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아무 때나 증명서류(출원인이 공지디자인에 대한 창작자 또는 적법한 승계임을 증명)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지문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 구법 제36조 제2항의 내용으로 보이나, 개정법에서는 임의의 시기에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은 아니다.
- ⑤ |×|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로는 제36조 제1항이 없다(제51조 제1항). 때문에 우선일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이어서는 안 되고, 출원일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지문의 경우 출원일 2024. 3. 15. 은 공지된 날인 2023. 2. 6. 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시점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4 분할출원

[58회]

21. 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48조 제4항).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가 아니고, 발송되기 전까지이다.
- ② | ○ |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 ③ | ○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제48조 제2항).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
- ④ |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6조 제2항).
- ⑤ | ○ | 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분할출원 가능하다(심사기준).

[60회]

22.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②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 ③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 ② |○|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제50조 제1항, 심사기준).
- ③ |○|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제50조 제5항).
- ④ |×| 우선권주장 자동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이 아니라 ‘~ 본다’의 간주다.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제4항).
- ⑤ |○|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3항(취지 표시 등) 및 제4항(증명서류 제출)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0조 제2항) .

15 심사 및 우선심사

[61회]

2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③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 해설 / 정답 ③ [조문 문제]

방북4반수국 / 벤중직지선 / 국조국출합

- ① |○|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시행령 제6조 제1호).
- ②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시행령 제6조 제14호).
- ③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조 제9호).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이 아니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이 우선심사대상이다.
- ④ |○|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시행령 제6조 제12호).
- 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시행령 제6조 제10호).

[62회]

23-1.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② [조문 문제]

- ①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거짓으로 지정 받은 경우는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가 아니라 취소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 제42조는 직권 재심사 사유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조의2 제1항).
 -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 ③ |×|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2조 제3항).
 -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4조 제1항).

- ⑤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6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제64조 제4항).

16 출원공개 및 비밀디자인

[58회]

24.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④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② [조문 문제]

- ① | ×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 ② | ○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 ③ | × |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 제6항).
- ④ | × | 제43조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5조 제3항).
- ⑤ | × |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i)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ii)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iii)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vi)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제113조 제2항).

비밀디자인 조문 정리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회]

25.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까지 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제4조 제2항).
- ② |×|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51조 제2항).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제51조의3 제1항).
- ③ |×|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제도가 없다.
- ④ |×|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 제6항). 추정한다가 아니라 “~으로 본다”로 간주한다.
- ⑤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25-1.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 제6항).
- ② |○|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5조 제2항).
- ③ |○|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5조 제3항).
- ④ |○|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제113조 제2항).
- ⑤ |×|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6조 제1항). 즉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17 디자인권

[62회]

25-2.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ㄱ.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제84조 제3항).
- ㄴ.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7조 제1항 제3호).
-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ㄷ. |×| 특허와 내용이 같다.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87조 제3항).
- ㄹ.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제87조 제1항 제2호).
- ㅁ. |×| 특허와 내용이 같다. 특허심판원장이 아니고 지식재산처장이 면제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제86조 제1항).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58회]

2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 ㄹ.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 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 ⑤ ㄷ, ㄹ, ㅁ | |

/ 해설 / 정답 ③ [조문 문제]

- ㄱ. |○|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i)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ii)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제94조 제2항).
- ㄴ. |×|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제105조).

복수디자인 조문 정리

전체로 취급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각각 취급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보정각하)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0조(분할출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우선심사)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ㄷ.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제97조 제6항).
- ㄹ.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91조 제2항).
- ㅁ. |○|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제112조).

[60회]

2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③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권의 효력은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제94조 제1항 제2호).
- ②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제93조).
- ③ |○|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제105조).
- ④ |○|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제108조).
- ⑤ |×|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제111조 제1항).

[60회]

2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

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권은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제91조 제1항 본문).
- ② |×|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제91조 제1항 단서).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이를 출제자는 존속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③ |×|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 ④ |×|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제84조 제3항).
- ⑤ |○|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제199조 제2항).

[61회]

29.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③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④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 ⑤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 해설 / 정답 ② [사례 문제]

- ① |○|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 제3항). 甲, 乙, 丙 간에 서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甲, 乙 동의 없이 丙은 유사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 ② |×|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제125조 제3항). 특허와 내용이 같다. 지분별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각 하심결된다. 무효심판청구할 때 피청구인에는 甲, 乙, 丙 공유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丙만 피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각하심결된다.

- ③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중 1인도 제기할 수 있다. 甲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 ④ |○| 특허와 내용이 같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1마22412).

- ⑤ |○|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한다는 의미가 다소 명료하지 않다. 참고로 甲 지분 양도는 공유물분할청구 필요 없이 乙, 丙 동의하에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청구 내용은 특허와 같다. 甲은 乙, 丙 동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 가능하며, 현물분할이 불가하기에, 대금분할로 이루어진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그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013다41578).

29-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 ④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 ⑤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제112조).
- ②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하여야 한다.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109조).
- ③ | × | 함께 설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제97조 제6항).
- ④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제111조 제2항).
- ⑤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공유물 분할청구한 자는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없으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당한 자는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

18 실시권

[59회]

30.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 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④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해설 / 정답 ③ [조문 문제]

- ① |○|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제97조 제3항).
- ②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제97조 제6항).

권리 충돌 문제로 관련디자인 배타권자 다수 불가 조문 정리

제35조(관련디자인)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

에 설정하여야 한다.

-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③ |×|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96조 제3항).
- ④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4조 제1항).
- ⑤ |○| 제84조 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제104조 제2항).

19 이의신청

[59회]

3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해설 / 정답 ③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제71조 제2항).
- ② |○|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68조 제3항).
- ③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할 수 없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75조).
- ④ |○|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제69조).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 ⑤ |○|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제73조 제5항). 디자

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73조 제6항).

20 심판 및 소송

[62회]

31-1.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 ④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20조).
- ②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30일이 아니라 7일이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8조 제5항).
- ③ | × | 특허와 내용이 유사하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57조 제1항).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제157조 제2항).
- ④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42조의2).
- ⑤ | ×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판관이 제135조(제척사유) 또는 제137조(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제141조).

32.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 ②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⑤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제73조 제3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73조 제6항).
- ②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44조 제3항).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144조 제5항).
- ③ |○| 특허와 내용이 같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77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77조 제3항).
- ④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77조 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77조 제3항).
- ⑤ |○| 특허와 내용이 같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3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139조 제4항).

불복 불가 조문 정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대가 불복 관련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제123조 제3항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결 중 대가 부분)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8회]

33. 디자인등록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별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별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⑤ [조문 문제]

- ① | × | 제42조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일 뿐; 직권재심사사유, 이의신청사유,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제121조 제1항).

심사등록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55)	이의신청사유(68①)	무효사유
27	일부심사대상(37④),	일부심사대상(37④),
디발권 0%(3①本), 디발권 10%(39)	물품·물품류 기재불비	물품·물품류 기재불비
직원(3①但)	(40②), 단일성(40	(40②), 단일성(40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①), 복수디자인(41),	①), 복수디자인(41),
2 i, ii, ii-2→33①本	한 별 물품 디자인(42)	한 별 물품 디자인(42)
	제외	제외

공업상 이용가능성(33①本) - 도면 기재불비	
신규성(33①각호), 창작성(33② i, ii), 선원(46①, ②), 확대된 선원(33③)	
부등록(34) - 국가·훈장 동일·유사, 공서양속反, 타인 업무 혼동 우려, 기능성	후발적 무효사유 추가
조약反	
관련디자인(35), 일부심사대상(37④),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직권재심사사유(66-2)

관련디자인 中 기본디자인과만 유사·3년·기본디자인권 존속(35①), 일부심사대상(37④), 물품·물품류 기재불비(40②), 단일성(40①), 복수디자인(41), 한 별 물품 디자인(42) 제외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조 제2항).
- ③ |×|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57조 제1항).
- ④ |×|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60조 제1항).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60조 제2항).
- ⑤ |○|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제166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제166조 제2항).

[59회]

34.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심판장은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제도가 없다.
- ② |×|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제125조 제1항).
- ③ |×| 제40조 제1항 위반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제150조 제4항).
- ⑤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9후10746).

[60회]

35.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ㄱ)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ㄷ)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ㄹ)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① ㄱ : 2개월, ㄴ : 6개월, ㄷ : 30일, ㄹ : 3일
- ② ㄱ : 2개월, ㄴ : 1년, ㄷ : 30일, ㄹ : 3일
- ③ ㄱ : 2개월, ㄴ : 1년, ㄷ : 30일, ㄹ : 7일
- ④ ㄱ : 3개월, ㄴ : 1년, ㄷ : 20일, ㄹ : 3일
- ⑤ ㄱ : 3개월, ㄴ : 1년, ㄷ : 20일, ㄹ : 7일

/ 해설 / 정답 ② [조문 문제]

- ㄱ, 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i)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ii)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
- ㄷ.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i)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ii)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iii)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다(제48조 제4항).
- ㄹ.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제138조 제2항).

[60회]

36.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④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

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해설 / 정답 ④ [판례 문제]

- ① |○|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16후878). 이를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한다.
- ②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4조 제4호).
- ③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2019후10746).
- ④ |×|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 제1항).
- 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98후2900).

[61회]

37.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

결이 확정된 경우

- ③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④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징이 불명확한 경우

/ 해설 / 정답 ④ [판례 문제]

- ① |○|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제3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디자인보호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확정된 심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가 어떤 물품의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확정된 심결의 효력은 심판의 대상이 된 확인대상디자인에만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2006허633).
- ②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2017허1366).
- ③ |○|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준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2008허4721).
- ④ |×| 지문이 상당히 불명료하다. 실시 중인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 가능하다는 점을 출제한 것으로 추측되나, 그렇다면 1번 지문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도 실시 중인 디자인과 다르더라도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이라면 각하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판례를 보면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실시 중인 디자인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에 관해 다툼이 없다면 이 또한 각하되는데, 어느 논리를 고려하더라도 지문이 명료하지 않다. 참고로

특허법 판례는 다음과 같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2014후2849).

- ⑤ 101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 특정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전부를 기재하거나 도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모양·색채를 기재하거나 도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2016허7725).

[62회]

37-1.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④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해설 / 정답 ② [판례 문제]

- ① 101 특허와 내용이 같다. 신규성 상실 예외의 대상이 되는 공지디자인을 근거로는 자유실시디자인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등 관련규정의 문언과 내용, 그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을 두었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3자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제2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5)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제3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받아 등록된 이상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제3자와의 이익균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2022후10012).

② I×I 위 1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다. 신규성 상실 예외의 대상이 되는 공지디자인을 근거로는 자유실시디자인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2022후10012).

③ I○I 특허와 내용이 같다. 이를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한다(2022후10012).

④ I○I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디자인 유사 판단할 때 공지부분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즉 양 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특징적 부분이 서로 비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비유사로 본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2013다202939).

⑤ I○I 위 1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다.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도 일반 디자인권과 다르지 않다(2022후10012).

21 국제출원

[58회]

38.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있어서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I O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i)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iii)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vi)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v)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vi)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제177조).

지식재산처장은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 한다(시규 제91조 제3항).

② |×|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i)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 ii)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 iii)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 vi)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 v)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 vi)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vii)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③ |×|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제175조 제3항).

④ |×|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제177조 제1항).

⑤ |×|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제178조 제3항, 제4항).

국제출원방법	
국제사무국에 직접(직접출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국제출원의 일반적인 방법.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eHague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 가능.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경유(간접출원) only 영어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간접 제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서 정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첫째 지식재산처가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국제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지식재산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송달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송달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국제출원(직접출원 or 간접출원) →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 국제등록 → 국제등록 공개 → 지정 계약당사자 관청 실체심사 → 5년 단위로 국제등록 갱신	

39.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 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 해설 / 정답 ① [조문 문제]

- ① | × | 디자인보호법에는 간접출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직접출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② | ○ | 국제사무국은 방식요건 심사 후 국제등록한다. 거절이유는 실체적 요건 심사는 각 지정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지정국 관청에서 하며,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결정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에 그 지정국 법령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 ○ | 헤이그에서는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 ○ | 헤이그에서는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 ⑤ | ○ | 국제출원하면서 출원인의 국가(채약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을 자기지정이라 한다. 헤이그에서는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용어 정의	
국제등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 다만 국제등록이 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채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함.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은 국제사무국(직접출원)에 국제출원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 관청을 통해 국제출원(간접출원)한 경우는 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후 이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달하는데, 1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관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고, 1개월 이후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됨. 다만 국제출원에 방식상 하자가 있어 보완명령 받고 대체서류 제출한 경우는 국제출원서 접수한 날이 아니라 대체서류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됨.
국제출원	국제등록을 위해서 디자인의 도면 등을 포함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절차.

국제등록부	국제출원이 방식요건에 부합하면 국제사무국이 생성하는 등록부.
계약당사자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계약당사자 영역	계약당사자의 영역이란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영역, 계약당사자가 정부간 기구인 경우 그 정부간 기구를 조성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국제출원의 지정 지정 계약당사자	지정이란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그 국제등록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것.
국제등록공개	국제사무국이 국제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 국제등록된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
국제등록공개 연기	최장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연기 신청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를 연기하는 것.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국제출원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을 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공개료는 연기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개료나 도면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됨.
보호거절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이유통지하는 것.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통지.
보호부여기술서 등록결정서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심사결과 국제등록의 보호를 승인할 때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서류. 단 지정계약당사자 관청이 보호거절통지도 안하고 보호부여기술서도 발송하지 않으면 보호거절통지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의 경과만으로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이 보호를 받음.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총 15년).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총 20년까지 보호 가능.
국제등록 변경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국제등록 권리자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 포기(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일부 디자인으로 감축(지정 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하는 것 등.

[61회]

40.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 ②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 ③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 ④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 해설 / 정답 ④ [조문 문제]

- ① |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직권보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95조).
- ② | ×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66조 제3항, 제4항, 제5항).
- ③ | × |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i)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ii)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iii)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④ | ○ | 심사관은 i)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ii)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63조 제1항).
- ⑤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제71조).

[62회]

40-1.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 정답 ③ [조문 문제]

- ① | ○ |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제179조 제1항).

- ②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4조).
- ③ |×|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제199조 제2항).
- ④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9조).
- 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04조).